

다만, 영업개시 전 뿐만 아니라 영업개시 이후에도 같은 사유로 영업을 중단한 경우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영업개시 지연이나 영업중단 기간 만큼 당연히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계약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계약자가 연장을 원할 경우에 연장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

○ 이미 계약된 임대시설물의 경우 그 효력을 계속 인정한다고 하는 부칙 제2조의 경과 규정을 삭제한 것은 그 동안 법리상 논란이 되어온 기존 계약자와의 계약의 효력과 계약기간에 대한 해석상 오해의 소지를 제거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계약효력의 계속인정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법리상이나 또한 서울시 고문번호사의 자문결과나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등 6개 단체가 서울시 지하철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신문판매대 등 운영계약 취소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서울지방법원의 판결(2000. 4. 12) 결과를 볼 때, 기존의 입차인과의 계약의 효력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영구적으로 계속해서 유효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종전과 같이 존치의 실익도 없는 경과조치를 두어 불필요한 오해와 민원을 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 계약우선순위를 정한 제5조의 별표의 개정안 중 “순국선열 유족”을 “독립유공자 후손(자녀 및 손자녀)”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하여, 기존의 독립유공자 중 순국선열유족의 경우에만 해당되던 것을 순국선열은 물론 애국지사까지 포함하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수혜가능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동조례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국선열유족”과 개정안 별표의 “독립유공자 후손”은 용어사용이 일치되지 않으며, 또한 후손으로 할 경우 배우자 등 다른 유가족이 누락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조례개정 취지에 비취볼 때 조례 제1조와 제5조 별표의 “순국선열유족”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독립유공자유가족”으로 수정하여

용어사용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 7.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가. 수정이유

동 조례안 중 시설물에 대한 계약 신청시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중 독립유공자 후손의 범위와 용어의 사용이 부적합하여 일부 문구를 정비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안 제5조 별표와 같이 종래의 “순국선열유족”을 “독립유공자후손”으로 확대하려고 하지만 후손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독립유공자유가족”으로 수정함.
(안 제1조 및 제5조 별표)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에관한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638
----------	-----

2000년 7월 일
문교보사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년 6월 15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00년 6월 16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8회 정례회 제6차 문교보사위원회
(2000년 7월 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정규태 보건복지국장)

가. 제안이유

○ 보건환경연구원법 제8조제2항에 종전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시험에 따른 수수료 또는 실비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0년 1월 12일자로 동법이 개정되면서 동조항을 수수료 또는 실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검사·시험에 대한 항목별 수수료액

을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관련규정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조례 제명인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에 관한
한계수수료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보건환
경에 관한 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로 변
경(안 제1조)
-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행하는 검사·시험 등
에 대한 수수료를 새로이 규정(안 제2조제
1항, 제2항 별표1, 별표2)
-보건복지부령 및 환경부령 기존과 동일
(410건), 신설(13건), 면제(1건)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윤병국)

- 본 개정조례안은 2000. 1. 12일자 보건환
경연구원법이 개정되어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시험에 따른 수수료 또는 실비는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됨에 따라 보
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검
사·시험에 대한 항목별 수수료액을 새로
이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
별시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수수료징수
조례」로 개정하여 제명을 보다 명확히 정
하고,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행하는 검
사·시험 등에 대한 수수료 종류는 총 424
건으로써 종전과 같이 보건복지부장관 또
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수수료 기준을 그대
로 적용한 것이 410건이고, 식품 첨가물의
시험, 토양유발시험, 수질검사, 침출수 검
사, 환경시료 중 다이옥신류와 같이 최근
환경오염 문제를 새로이 대두되고 있으나
적용항목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행정자치
부의 원가분석에 따라 산출하되 유사검사
시험기관과 수수료액을 비교검토후 실비보
상률을 적용하여 13건을 신설하였으며, 나
머지 1건은 광견병에 관한 검사로서 정부
의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되는 항목으로 삭제하는 것임.
- 의견수렴을 통하여 수수료 인상요인이 있
는 일부항목에 대하여는 유관기관의 비
교·검토 등 입법예고 과정을 거친 결과
일단 인상을 유보하였으며, 관련법령이 개
정되어 검사항목이 추가되는 일부에 대하
여만 신설하고 일부항목은 현실에 맞게 새
로이 조정된 것으로서 다만, 수수료의 조정

근거가 되는 수지분석 내지 원가계산이 타
시도 내지는 타 기관과 비교하여 산출한
것으로 사료되나 새로운 항목을 신설하거
나 향후 종전의 항목들 중 인상요인이 있
는 항목을 조정할 경우 보다 철저한 수지
분석과 원가계산 및 타 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수료산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안제3조제3항에서 기존에 검사·시험 의뢰
된 항목 중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시험
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립보건원 또는 국
립환경연구소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으나
여기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추가시켜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을 좀 더 확대하여 다양한 검
사·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은,
검사·시험의 신뢰성 및 정확성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고 향후에는 다양한 검사·
시험을 할 수 있는 시설과 능력을 갖추어
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중 다
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수여대상) ① 명예시민증은 서울특별시
에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외국인 중 서울특
별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서울 특별시민
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 외국인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
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후보자추천) 공공단체의 장, 10인 이상
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10인

이상의 시민은 명예시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안 제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
2.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심의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서울특별시행정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서울특별시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3. 기타 서울시정과 국제교류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⑤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또는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외빈에 대한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국제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①명예시민증은 서울특별시에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외국인 중 서울특별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서울특별시민과 거주 외

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②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 외국인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후보자 추천) 공공단체의 장, 1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10인 이상의 시민은 명예시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중에서 시장이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수여방법 및 부상)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명예시민증과 명예시민증명서를 수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는 명예시민메달 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③명예시민증, 명예시민수여증명서, 명예시민메달의 제작에 관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후관리) ①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②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시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시 주관 행사 참여하게 하는 등 시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수여기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수여취소) ①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자가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시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때부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상 혜택 및 시정참여의 기회부여도 취소된다.

제8조(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하기